

2014년 1월 18일 경찰승진시험문제 해설  
과목 : 경찰실무II

해설 : 송 광 호

◆ 문제 분석표 ◆

| 구분                   | 전체문제수<br>(40)    | 목차                     | 세부문제수   | 비고               | 특징 |           |
|----------------------|------------------|------------------------|---|------------------|----|-----------|
| 수사<br>총론             | 15               | 수사의 기초이론               |   |                  |    |           |
|                      |                  | 수사의 과정                 | 1번(조문), 2번(조문), 3번(조문),<br>4번(조문), 12번(조문)                          | 조문문제 : 5개        |    |           |
|                      |                  | 수사지휘론                  | 5번(조문)  | 조문문제 : 1개        |    |           |
|                      |                  | 현장수사활동                 | 6번(조문), 7번(조문), 8번(조문),<br>9번(조문)                                   | 조문문제 : 4개        |    |           |
|                      |                  | 조사요령                   |   |                  |    |           |
|                      |                  | 수사행정                   | 10번(조문), 11번(조문)  | 조문문제 : 2개        |    |           |
|                      |                  | 과학수사                   | 13번, 14번, 15번   |                  |    |           |
| 개별<br>범죄<br>수사       | 8                | 강력범죄 수사                | 16번(조문)   | 조문문제 : 1개        |    |           |
|                      |                  | 철도사범 수사                | 17번   |                  |    |           |
|                      |                  | 폭력사범 수사                | 18번(조문), 19번(조문)  | 조문문제 : 2개        |    |           |
|                      |                  | 마약류사범 수사               | 20번   |                  |    |           |
|                      |                  | 지능범죄 수사                |   |                  |    |           |
|                      |                  | 특별법 사범 등 수사            | 21번(조문), 22번(조문), 23번(조문)   | 조문문제 : 3개        |    |           |
| 윤리론                  | 2                | 경찰과<br>윤리              | 서론  | 24번(실무1과 동일)     |    |           |
|                      |                  |                        | 경찰윤리의 기초  | 25번(실무1과 동일)     |    |           |
|                      | 6                | 경찰<br>윤리의<br>주제별<br>탐구 | 현대국가와 경찰환경  |                  |    |           |
|                      |                  |                        | 바람직한 경찰모델과<br>전문직업화   |                  |    |           |
|                      |                  |                        | 경찰의 일탈  | 26번(조문, 실무1과 동일) |    | 조문문제 : 1개 |
|                      |                  |                        | 경찰의 문화  | 27번(실무1과 동일)     |    |           |
|                      |                  |                        | 경찰조직과 경찰인   | 29번(실무1과 동일)     |    |           |
| 경찰인의 윤리강령과<br>경찰윤리강령 | 28번(조문, 실무1과 동일) | 조문문제 : 1개              |   |                  |    |           |
| 생활안<br>전론            |                  | 범죄의 개념                 |   |                  |    |           |
|                      | 1                | 범죄원인론                  | 30번   |                  |    |           |
|                      | 1                | 범죄의 통제론                | 31번   |                  |    |           |
|                      | 1                | 지역경찰활동                 | 32번(매뉴얼)  |                  |    |           |
|                      | 1                | 경찰관직무집행법               | 33번(조문)   | 조문문제 : 1개        |    |           |
|                      | 7                | 생활질서활동                 | 34번(조문), 35번(조문), 36번(조문),<br>37번(조문), 38번(조문),<br>39번(조문), 40번(사례) | 조문문제 : 7개        |    |           |
|                      |                  |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   |                  |    |           |

1. 수사 : 윤리 : 생활안전  
= 23 : 8 : 11
2. 박스형 개수문제 : 0개
3. 조문문제 : 28개  
수사 : 윤리 : 생활안전  
= 18 : 2 : 8
4. 경찰윤리론은 다른 경찰실무 I·III와 문제가 동일함.
5. 단문형 문제가 많음.
6. 시험 직전에 개정된 법령을 출제하였음.
7. 조문을 정리하여 도표로 정리하여 준비하여야 하고, 실무문제집에 있는 도표를 잘 보아야 함.
8. 특정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음.

## 경찰실무 유료 모의고사 진행에 관한 공지

### 1. 유료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과목

가. 경찰승진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

경찰실무종합 - 경감급, 경위급 대상

경찰실무1 - 경사급, 경장급 대상

경찰실무2 - 경사급, 경장급 대상

경찰실무3 - 경사급, 경장급 대상

경찰학개론 - 경찰간부후보생시험 준비자 대상

나. 일반순경, 경찰행정학과특채를 준비하는 경우 : 경찰학개론, 수사실무

### 2. (위 1.의 가.) 진행과정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가. 진도별 1차 모의고사 : 1회당 40문항씩 12회

나. 진도별 2차 모의고사 : 1회당 40문항씩 12회

다. 전범위 모의고사 : 1회당 40문항씩 12회

### 3. (위 1.의 나.) 진행과정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가. 진도별 모의고사 : 1회당 20문항씩 10회

나. 전범위 모의고사 : 1회당 20문항씩 10회

### 4. 출제범위

가. 기출문제

나. 기출문제의 변형문제

다. 경찰공제회 실무문제집의 변형문제

※ 실무문제집에서 언급하는 법령과 행정규칙 등 관련조문 문제도 출제합니다.

※ 실제로 경찰승진시험은 실무문제집의 문제와 똑같은 출제되지 않고 실무문제집의 변형문제로 출제됩니다.

※ 경간부시험과 순경시험은 실무문제집의 변형문제뿐만 아니라 약간 범위를 벗어나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 5. 보통 1주당 1회의 모의고사를 다음 카페 "경찰실무교실-송광호"의 해당콘텐츠에 게재합니다.

### 6. 모의고사의 구성

모의고사는 (1) 문제파일과 (2) 정답 및 해설파일 등 2개로 이루어집니다.

파일은 pdf파일로 올려지므로

pc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도 있고

출력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휴대전화에는 Adobe Reader를 다운로드하여야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 7. 매회 박스형개수 문제

매회 박스형개수 문제는 40문항 기준으로 8개에서 20개로 합니다.

### 8. 해설

해설부분에는 틀린 설문에 대한 해설을 주로 하나

옳은 설문이라하더라도 난해한 경우나 근거를 알아야 할 경우에는 해설을 붙이며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근거조문을 붙여서 개인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출제된 문제와 관련 조문은 꼭 혼자서라도 찾도록 합니다.

### 9. 모의고사 실시 시작 : 2014년 3월

※ 유료 모의고사비 결제 방법은 다음 카페 “경찰실무교실-송광호” <http://cafe.daum.net/nolpolice> 에서 소개 합니다.

※ 062-416-9429 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2014년 1월 18일

“경찰실무교실-송광호”의 송광호 올림.

## 1. 범죄정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첩보수집 내역, 평가 및 처리결과는 CIAS를 이용하여 전산관리한다.
- ②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일정기간 동안 개인별로 첩보성적을 평가하여 포상 및 특별승진 등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제출자에게 사실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②

- 해설
- ① (옳음)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11조(평가) 제3항
  - ② (틀림)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CIAS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7조(평가 및 기록관리 책임자) 제5항).
  - ③ (옳음)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12조(포상) 제2항
  - ④ (옳음)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7조(평가 및 기록관리 책임자) 제3항

조문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7조(평가 및 기록관리 책임자)

- ① 평가 및 기록관리 책임자(이하 "평가 책임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경찰청은 과학수사센터장
  2.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는 수사과장, 형사과가 분리된 경우 형사과장
- ②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를 신속히 검토 후 적시성, 정확성, 활용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여야 한다.
- ③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제출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의 내용이 부실하여 보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출자에게 반려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CIAS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 ① 범죄첩보의 성적 평가를 위한 1건당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보 : 10점
    - 가. 전국단위 기획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첩보
    - 나. 2개 이상의 지방청과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경찰청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
  2. 중보 : 5점
    - 2개 이상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지방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
  3. 통보 : 2점
    - 경찰서 단위에서 내사할 가치가 있는 첩보
  4. 기록 : 1점
    -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
  5. 참고
    - 단순히 수사업무에 참고가 될 뿐 사용가치가 적은 첩보
- ② 정책첩보의 성적 평가를 위한 1건당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보 : 10점
    - 전국적으로 활용·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
  2. 중보 : 5점
    - 지방청 단위에서 활용·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
  3. 통보 : 2점
    - 경찰서 단위에서 활용·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
  4. 기록 : 1점
    - 추후 활용·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
  5. 참고
    - 단순히 수사업무에 참고가 될 뿐, 활용·시행할 가치가 적은 첩보
- ③ 첩보수집 내역, 평가 및 처리결과는 CIAS를 이용하여 전산관리한다.

제12조(포상)

- ① 수사첩보에 의해 사건해결 또는 중요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 첩보제출자를 사건을 해결한 자 또는 검거자와 동등하게 특별승진 또는 포상할 수 있다.
- ② 일정기간 동안 개인별로 첩보성적을 평가하여 포상 및 특별승진 등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제출한 첩보에 의해 수사시책 개선발전에 기여한 자는 별도 포상한다.

2. 수사촉탁 처리기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피의자 조사 2개월
- ② 사건기록 사본 송부 15일
- ③ 소재수사 1개월
- ④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등 조사 15일

정답 ④

해설 ① (틀림) 피의자 조사 20일(↔ 2개월 (x))(『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13조(수사촉탁 처리기한 등) 제1항 제1호)

② (틀림) 사건기록 사본 송부 10일(↔ 15일 (x))(『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13조(수사촉탁 처리기한 등) 제1

항 제3호)

③ (틀림) 소재수사 10일(↔ 1개월(x))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13조(수사촉탁 처리기한 등) 제1항 제3호)

④ (옳음)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13조(수사촉탁 처리기한 등) 제1항 제2호

조문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13조(수사촉탁 처리기한 등)

① 수사촉탁의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의자 조사 20일
2.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등 조사 15일
3. 소재수사, 사건기록 사본 송부 10일

② 제1항의 처리기한 내에 촉탁사항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촉탁한 수사관과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하고 수사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매월 1회 촉탁받은 사건의 성실한 처리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3. 압수물 처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한다.
- ②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 ④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모든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① (옳음) 『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1항

② (옳음) 『형사소송법』 제332조(몰수의 신고와 압수물)

③ (옳음) 『형사소송법』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제1항

④ (틀림)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제1항).

조문

『형사소송법』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①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③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07.6.1>

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①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②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②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7.18]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중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18, 2007.6.1, 2011.7.18>

**제332조(물수의 선고와 압수물)**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물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 4.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한다.
- ②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허가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청구 또는 신청의 주체가 된다.

정답 ④

해설

① (옳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제11호 마목

② (옳음)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월의 범위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제7항].

③ (옳음)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급한 상황에 있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원칙적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제1항].

④ (틀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제1항].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청구 또는 신청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청구 또는 신청의 주체가 된다.

조문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29, 2004.1.29, 2005.1.27>

1.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2. "우편물"이라 함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성·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4. "당사자"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한다.
  5. "내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고 있는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6.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성·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8. "감청설비"라 함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 기기·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8의2. "불법감청설비탐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9. "전자우편"이라 함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된 메시지를 말한다.
10. "회원제정보서비스"라 함은 특정의 회원이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또는 그와 같은 네트워크의 방식을 말한다.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 나.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 다.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 라. 사용도수
  -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12. "단말기기 고유번호"라 함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이 체결된 개인의 이동전화 단말기기에 부여된 전자적 고유번호를 말한다.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 ① 검사(검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 ②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보통 군사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1.12.29>
- ④ 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청구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기간·집행장소·방법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청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였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 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부한다. <개정 2001.12.29>
- ⑥ 제5항의 허가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기간 및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 ⑦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월의 범위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 ⑧ 법원은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헌법불합치, 2009헌가30, 2010. 12. 28.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용전기통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 및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하되, 제1항의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호와 같다.

1. 살인, 강도, 강간, 약취유인, 방화 사건
2. 피해자가 많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3. 조직폭력, 실종사건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2010. 6. 7 개정)
4. 국가중요시설물 파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테러사건 또는 그러한 테러가 예상되는 사건
5. 기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6. 「수사긴급배치규칙」 상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건 발생 후 상당시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② 범인의 성명, 주거, 연고선 등이 판명되어 조속히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
- ③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
- ④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때

정답 ③

해설

- ① (옳음) 「수사긴급배치규칙」 제6조(긴급배치의 생략) 제1호
- ② (옳음) 「수사긴급배치규칙」 제6조(긴급배치의 생략) 제3호
- ③ (틀림)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에는 긴급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수사긴급배치규칙」 제12조(긴급배치의 해제) 제2호).
- ④ (옳음) 「수사긴급배치규칙」 제6조(긴급배치의 생략) 제2호

조문

「수사긴급배치규칙」

**제6조(긴급배치의 생략)** 발령권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건발생후 상당시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때
3. 범인의 성명, 주거, 연고선등이 판명되어 조속히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
4. 기타 사건의 성질상 긴급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12조(긴급배치의 해제)**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긴급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① 범인을 체포하였을 때
- ②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
- ③ 긴급배치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인정될 때

**제13조(긴급배치 해제의 특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긴급배치의 장기화로 인하여 당면 타업무 추진에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급배치를 해제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찰력만으로 경계 및 수사를 명할 수 있다.

**7. 피해통보표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피의자가 검거되었을 때
- ② 피의자가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
- ③ 피해통보표 전산입력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
- ④ 피의자가 사망하였을 때

정답 ②

해설

- ① (적절함)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12조(수법원지 및 피해통보표등의 폐기) 제2항 제1호
- ② (부적절함) 수법원지가 피작성자가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전산자료를 삭제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12조(수법원지 및 피해통보표등의 폐기) 제1항 제2호).
- ③ (적절함)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12조(수법원지 및 피해통보표등의 폐기) 제2항 제3호
- ④ (적절함)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12조(수법원지 및 피해통보표등의 폐기) 제2항 제2호

조문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12조(수법원지 및 피해통보표등의 폐기)**

① 수법원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전산자료를 삭제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1. 피작성자가 사망하였을 때
2. 피작성자가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
3. 원지작성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
4. 작성자의 수법분류번호가 동일한 원지가 2매이상 중복될 때 1매를 제외한 자료
5.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법원지만 폐기하고 전산입력 자료는 삭제하지 아니한다.

② 피해통보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전산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1. 피의자가 검거되었을 때
2. 피의자가 사망하였을 때
3. 피해통보표 전산입력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
4. <삭 제>

**8. 「범죄수사규칙」 상 지명통보대상자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기, 횡령, 장물죄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정한 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②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재수사결과 소재불명인 자
- ③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
- ④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지명수배자

정답 ①

해설 ① (틀림) 사범경찰관은 사기, 횡령, 배임죄(↔ 장물죄(x))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정한 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 소재가 불명할 때에는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 다만, 기소중지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지명통보를 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179조(지명통보) 제3호).

- ② (옳음) 「범죄수사규칙」 제179조(지명통보) 제1호
- ③ (옳음) 「범죄수사규칙」 제179조(지명통보) 제2호
- ④ (옳음) 「범죄수사규칙」 제179조(지명통보) 제4호

조문

「범죄수사규칙」

**제179조(지명통보)** 사범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재가 불명할 때에는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 다만, 기소중지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지명통보를 하여야 한다.

1.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재수사결과 소재불명인 자
2.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
3. 제1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기, 횡령, 배임죄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정한 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2013.12.16. 개정)
4.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지명수배자

**제180조(지명통보된 자 소재발견시 조치사항)**

- ① 경찰관은 지명통보된 자(이하 "지명통보자"라 한다)의 소재를 발견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지명통보된 사실과 범죄사실, 지명통보한 관서(이하 "통보관서"라 한다) 등을 고지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발견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관서에 출석하거나 사건이송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별지 제157호 서식의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를 출력하여 피의자에게 교부하고 통보관서로 사건인계서를 작성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 ② 경찰관은 소재발견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각 건마다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를 송부받은 통보관서의 사건담당 경찰관은 즉시 지명통보된 피의자에게 피의자가 출석하기로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거나 사건이송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④ 경찰관은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지 않거나 사건이송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제173조부터 제1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체포영장청구기록에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 출석요구서 사본 등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본인이 확인한 일자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거나 사건이송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3.12.16. 개정)

**제181조(지명통보자에 대한 특칙)**

- ① 제18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기관 고발사건 중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중지된 자를 발견한 발견관서의 경찰관은 통보관서로부터 사건송치의견서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송부받아 피의자를 조사한 후 조사서류만 통보관서로 보낼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상습적인 법규위반자 또는 전과자이거나 위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발견관서의 경찰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하고 강제



2. 간이검사 :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라)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한다.
3. 정밀검사 :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같이입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제1호와 제2호의 신체 등의 검사를 통하여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고 제4항제3호의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등의 제거가 즉시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검사 후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4항과 제5항에 의한 신체 등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이를 지연하거나 신체에 대한 굴욕감을 주는 언행 등으로 유치인의 고통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근무일지에 기재하고 특이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9조의 위험물 등이 발견되면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1. 우범자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강도죄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는 자료보관 대상자에 해당한다.
- ② 첩보수집 대상자는 우범자로 편입 후, 전산입력하고 2년간 범죄관련성 여부에 대해 첩보를 입수한다.
- ③ 방화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는 첩보수집 대상자에 해당한다.
- ④ 경찰서장은 수사(형사)과 직원 중 우범자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구대·파출소장은 첩보수집 대상자별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① (틀림) **첩보수집 대상자**(↔ 자료보관 대상자(x))는 강도·절도·마약류 관련 범죄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성격,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우범자의 구분) 제2항 제5호).

- ② (옳음)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우범자의 구분) 제4항
- ③ (옳음)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우범자의 구분) 제2항 제3호
- ④ (옳음)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첩보수집) 제1항

조문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우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죄단체의 조직원 또는 불시에 조직화가 우려되는 조직성폭력배 중 범죄사실 등으로 보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살인, 방화,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마약류사범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 중 그 성격,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

**제3조(우범자의 구분)**

- ① 우범자는 첩보수집 대상자, 자료보관 대상자로 구분한다.
- ② 첩보수집 대상자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격,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조제2호중 살인으로 실형(금고형 이상)을 받고 출소한 사람
  3. 제2조제2호 중 방화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4. 제2조제2호 중 강간·강제추행의 죄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고 출소하였거나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5. 제2조제2호 중 강도·절도·마약류 관련 범죄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 ③ 자료보관 대상자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선정한다.
  1. 첩보수집 대상자중 기간만료 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첩보수집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제2조제2호중 살인·방화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범행동기, 범죄사실 등 심사결과 자료보관만으로 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제2조제2호 중 강간·강제추행의 죄로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4. 제2조제2호 중 강도·절도·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제3조제2항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④ 첩보수집 대상자는 우범자로 편입 후, 자료를 전산에 입력하고 2년간 범죄관련성 여부에 대해 첩보를 입수한다.
- ⑤ 자료보관 대상자는 우범자로 편입 후 해당자료를 전산에 입력하여 범죄 발생 시 수사자료로 활용한다.

**제6조(첩보수집)**

- ① 경찰서장은 수사(형사)과 직원 중 우범자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구대·파출소장은 첩보수집 대상자별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지구대·파출소 담당자는 첩보수집 대상자에 대해서 3개월에 1회이상 범죄관련 여부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경찰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우범자 담당자는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우범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우범자의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④ 수집된 첩보는 통상의 범죄첩보처리 절차에 의해 처리한다.

**12. 변사체 검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변사체 검시의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다.
- ② 「의료법」에는 의사 등이 변사체(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사체) 발견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③ 행정검시는 발생보고→행정검시명령→검시·검안→유족에게 시체인도→종결의 순으로 한다.
- ④ 시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시체 현존지의 구청장 등에게 인도한다.

정답 ①  
해설

- ① (틀림) 변사체 검시의 주체는 검사이고{「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사법경찰관은 변사체 검시의 대행자가 될 수 있다{「범죄수사규칙」 제32조(검시의 대행)}.
- ② (옳음)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의료법」 제26조(변사체 신고)}.
- ③ (옳음) 「행정검시규칙」 제3조(처리요강)
- ④ (옳음) 사법경찰관은 변사체를 검시한 결과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지품 등과 같이 시체를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시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시체가 현존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37조(시체의 인도) 제1항}.

조문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신설 1961.9.1>
-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61.9.1>

조문

「의료법」

**제26조(변사체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조문

「범죄수사규칙」

**제32조(검시의 대행)**

- ①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직접 검시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의사를 참여시켜 시체를 검시하고 즉시 그 결과를 경찰서장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이 검시를 할 때에는 검시 관련 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때 검시에 참여한 검시관은 별제 제205호 서식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검시를 할 때 별지 제10호 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변사자의 가족, 친족, 이웃 사람, 관계자 등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이를 의사의 검안서와 촬영한 사진 등과 함께 검시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7조(시체의 인도)**

- ① 사법경찰관은 변사체를 검시한 결과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지품 등과 같이 시체를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시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시체가 현존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체를 인도하였을 때에는 인수자로부터 별지 제13호 서식의 시체 및 소지품품 인수서를 받

- 아야 한다.  
 ③ 변사체는 후일을 위하여 매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문 「행정검시규칙」

**제3조(처리요강)**

- ① 지구대장·파출소장(이하 "지구대장등"이라 한다.)은 관내에서 행정검시의 대상으로 판단되는 시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경찰서장에게 「범죄수사규칙」 제31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시체가 행정검시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구대장등에게 행정검시를 명한다.
- ③ 행정검시의 명을 받은 지구대장등은 의사의 검안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행정검시 조서를 작성하고, 시체는 즉시 유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시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신원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범죄수사규칙」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행정검시를 행한 지구대장등은 행정검시 조서, 의사검안서, 시체인수서를 첨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경찰서장은 지구대장등이 보고한 발생보고서(여백에 행정검시 지휘서명날인)에 행정검시결과 보고서를 첨부, 일자순으로 빠짐없이 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색인을 기록한 행정검시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3. 다음 중 혈흔검사를 할 때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혈흔예비시험→혈흔확인시험→인혈증명시험→혈액형검사
- ② 혈액형검사→혈흔확인시험→혈흔예비시험→인혈증명시험
- ③ 인혈증명시험→혈흔예비시험→혈흔확인시험→혈액형검사
- ④ 혈흔확인시험→인혈증명시험→혈흔예비시험→혈액형검사

정답 ①

해설 ① (옳음) 혈흔감정의 순서는 ㉠ [육안검사] 육안으로 혈흔부착여부 및 부착상태 등을 관찰하고, 혈흔으로 의심가는 부분에 대하여 혈흔인가를 증명하는 ㉡ [혈흔예비시험], ㉢ [혈흔확인시험]을 실시하고, 혈흔이 증명되면 사람의 혈흔인가를 증명하는 ㉣ [인혈증명시험]을 하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혈흔으로 증명된 다음에는 ㉤ [혈액형 검사]를 실시한다.

**14. 화재감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재원인의 3요소는 가연물, 화원, 공기이다.
- ② 가연물을 아궁이, 온돌, 성냥, 전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③ 화재원인의 3요소 중 한 가지만 부족해도 연소는 일어나지 않는다.
- ④ 증거인멸의 수단으로 방화가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정답 ②

해설 ② (틀림) 화재의 원인의 3요소 중 **화원**(↔ 가연물(x))을 아궁이, 온돌, 성냥, 전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리 **화원의 2요소** : 화재원인의 3요소는 화원, 가연물(착화물), 공기이며 이러한 3요소가 갖추어진 때에만 연소현상이 일어난다. 즉, 화원과 가연물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착화되는 것이 아니라, 화원과 가연물 사이에 부주의한 경과 즉 착화과정(책임소재)이 개입되어야 착화로 발전되는 것이다(예 석유난로를 불연재인 콘크리트 바닥에 얹어뜨렸을 때 다른 가연물이 주위에 없는 한 화재로 발전되지 않음).

| 3요소           | 종 류    |  | 소화방법   |
|---------------|--------|--|--|
| 화원<br>(불씨)    | 유염화원   | 종이, 목재와 같이 불꽃이 나는 물질                                     | 물이나 CO <sub>2</sub> 소화기를 사용하여 냉각소화법을 사용한다.   |
|               | 무염화원   | 담배와 같이 불꽃이 나지 않는 물질, 훈소(燻燒)                              |  |
|               | 잠재성 화원 | 전기, 화공약품, 라지에터처럼 열이 축적되어 화재가 발생하는 것                      |  |
| 가연물<br>(착화물)  | 기체가연물  | 반드시 밀폐된 용기속에 보관(확산연소, 혼합연소)                              | 연소확대시 중간가연물을 파괴하거나 산불발생시 맞불을 놓는 제거소화법을 사용한다. |
|               | 액체가연물  | 휘발유·신나처럼 증발연소, 중유·타르 등 분해연소                              |  |
|               | 고체가연물  | 목탄·왁스·숯·코크스·금속분(마그네슘)은 표면연소, 나프탈렌·과라핀은 증발연소, 석탄·목재는 분해연소 |  |
| 공기<br>(산화공급원) |        |  | 포말소화기나 모래 등을 사용하                             |



12. "현장지문"이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13. "준현장지문"이라 함은 피의자 검거를 위하여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14. "관계자지문"이라 함은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피의자지문이 아닌 지문을 말한다.
15. "유류지문"이라 함은 현장지문 준현장지문 중에서 관계자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피의자가 유류하였다고 인정되는 지문을 말한다.
16. "라이브스캐너(생체지문인식기)"라 함은 지문을 전자적으로 채취하는 장비를 말한다.
17.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규정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특정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 ③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정답 ③  
해설

- ① (옳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3항
- ② (옳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같은 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2항).
- ③ (틀림) 13세(← 16세(x))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3항}.
- ④ (옳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1항).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4.5>
-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17. 다음 절도사건 수사방법 중 성격이 다른 것은?**

- ① 인상착의에 의한 수사
  - ② 범인이 들릴만한 음식점 등에서 범행 전후의 행적수사
  - ③ 수법에 의한 수사
  - ④ 범인추리에 의한 수사
- 정답 ②

해설 정리 ② (틀림) “①, ③, ④” 3개는 **범인중심**수사에 해당하고, “②” 1개는 **현장중심**수사에 해당한다.  
**절도사건 수사방법**

|                |  |
|----------------|--|
| 현장중심수사         | ① 일정한 지역의 공지·하수 등의 수색에 의한 장물과 용구들의 발견<br>② 부근 거주자로부터 범죄에 관계있는 사항의 탐문<br>③ 범인이 들뜬만한 음식점 등에서 범행 전후의 행적수사                           |
| 범인중심수사         | ① 수법에 의한 수사<br>② 인상착의에 의한 수사<br>③ 범인추리에 의한 수사  |
| 피해자중심수사        | ① 연고감수사 : 친족·전 고용인 등 피해자측과 어떤 관계가 있는 자의 물색<br>② 지리감수사 : 부근 거주자 등 범행지의 지리적 사정에 밝은 자의 발견과 그 물색                                     |
| 유류물수사          | ① 제조원·판매지의 수사<br>② 유류품의 감정 : 모발, 분, 지문, 토사물, 공구흔 등   |
| 피해품중심수사 (장물수사) | 절도사건중에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하는 수사가 장물수사이다.<br>① 특징파악, 장물유통대상수사 : 귀중품에 대해서는 구입처, 특징, 종류, 명칭 등<br>② 피해품 확보, 장물수배서 발부<br>③ 고물상, 전당포업자등에 대한 수사 |
| 탐문수사           | 피해자 측에만 한정하지 말고 주변(목격자, 현장부근 거주자, 교통기관의 종사자, 전과자, 불량배 등)까지 행한다.  |
| 수법수사           | 침입·도주방법, 물색의 방법 등 범죄수법을 파악하여 범죄수법원지·피해통보표·피의자 사진 등의 자료를 활용하는 수사를 말한다.  |
| 계속수사           | 기소중지중인 자에 대하여는 지명수배·통보를 확행하고 중요미제사건은 계속수사를 수행하여 완검토록 한다.   |

## 18.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는 제외)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가정구성원 범위에 속한다.
- ② 영아유기, 주거·신체수색, 약취유인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 유형에 속한다.
- ③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간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만을 말한다.
- ④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 내용 중 피해자의 보호시설 인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정답 ④

해설 ① (틀림)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는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가정구성원 범위에 속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제2호 나목].

② (틀림) 영아유기죄와 주거·신체수색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 유형에 속한다 [같은 법 제2조(정의) 제3호 나목, 사목]. 그러나 “절도, 강도, 약취·유인, 사기, 배임, 횡령, 주거침입, 방화, 아동복지법상 구결행위” 등은 가정폭력범죄가 아니다.

③ (틀림)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만(x))를 말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제1호].

④ (옳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제2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1.8.4, 2012.1.17>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정리 **저작권**

| 법 률                                    | 보호대상   | 보호기간 및 친고죄여부  |
|--|--|---|
| 저작권법<br>(영상저작물<br>및 컴퓨터<br>프로그램<br>포함) |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                  | <p><b>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b></p> <p>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p> <p>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p> <p><b>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b></p> <p>①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p> <p>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p> <p><b>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b>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p> <p><b>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b>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p> <p><b>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b>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p> <p><b>제95조(보호기간)</b></p> <p>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p> <p>② 데이터베이스의 갱신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p> <p><u>원칙적으로 친고죄</u>, 예외적으로 영리목적 권리침해죄(동법 제140조)는 비친고죄</p> |
|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7조              | 반도체집적회로(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배치설계)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를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반도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으로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10년 또는 그 배치설계의 창작일부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br>배치설계권이나 전용이용권을 침해한 자(침해죄 등, 친고죄, 동법 제45조)   |

정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영업비밀)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보호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친고죄도 아니다(동법 제18조 제5항 삭제).

**22. 「대기환경보전법」 상 용어의 정의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검댕-연소 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
- ②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

- ③ 입자상물질 - 물질의 파쇄·선별·퇴적·이적 기타 기계적 처리 또는 연소·합성·분해 시에 발생하는 기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
- ④ 특정대기 유해물질 -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정답 ③

해설

- ① (옳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제8호
- ② (옳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제8호].
- ③ (틀림)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이란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固體狀)({↔ 기체상(氣)} 또는 액체상(液體狀)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제5호].
- ④ (옳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제9호

주문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2013.4.5)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의2.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
4. "가스"란 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5.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이란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固體狀) 또는 액체상(液體狀)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6.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7. "매연"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추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8. "검댕"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9.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주행특성이 가목에 따른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13의2. "원동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제13호나목 외의 건설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 나. 농림용 또는 해상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14. "선박"이란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15. "첨가제"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자동차의 연료에 부피 기준(액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무게 기준(고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1

- 퍼센트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補正)하는 과정에 첨가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첨가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 15의2. "촉매제"란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저공해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17.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18.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19. "공회전제한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20. "온실가스 배출량"이란 자동차에서 단위 주행거리당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sub>2</sub>) 배출량(g/km)을 말한다.
21.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란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를 해당 자동차 총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g/km)을 말한다.

**23. 「공직선거법」 상 일간신문광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간신문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할 수 있다.
- ② 대통령선거는 총 70회 이내 게재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선거는 총 5회 이내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인구 300만을 넘는 시·도에 있어서는 300만을 넘는 매 100만까지 마다 1회를 더한다.
- ④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총 20회 이내 게재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① (틀림) 일간신문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x)) 「공직선거법」 제69조(신문광고) 제2항.

- ② (옳음) 「공직선거법」 제69조(신문광고) 제1항 제1호
  - ③ (옳음) 「공직선거법」 제69조(신문광고) 제1항 제3호
  - ④ (옳음) 「공직선거법」 제69조(신문광고) 제1항 제2호
- 조문 「공직선거법」 제69조(신문광고)

①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당·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간신문에의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본다. <개정 1997.11.14, 2004.3.12, 2005.8.4, 2009.7.31>

1. 대통령선거  
 총 70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총 20회 이내

3. 시·도지사선거  
 총 5회 이내. 다만, 인구 300만을 넘는 시·도에 있어서는 300만을 넘는 매 100만까지마다 1회를 더한다.

② 제1항의 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회수는 해당 후보자가 각각 1회의 광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비용은 해당 후보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④ 삭제 <2010.1.25>

⑤ 후보자가 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고전에 이 법에 의한 광고임을 인정하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인증

서를 교부받아 광고를 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광고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인증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후보자의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삭제 <2010.1.25>
- ⑦ 삭제 <2000.2.16>
-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광고를 게재하는 일간신문을 경영·관리하는 자는 그 광고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선거기간 중에 같은 지면에 같은 규격으로 게재하는 상업·문화 기타 각종 광고의 요금중 최저요금을 초과하여 후보자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신설 1998.4.30>
- ⑨ 인증서의 서식, 광고근거의 표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4. 사회적·외적 윤리가 개인에게 투입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윤리교육은 개인의 윤리를 사회적으로 가치로운 윤리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 ② 인지단계에서는 사회적 소여로서의 사회적 윤리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③ 성찰단계에서는 구체적 상황에서 사회적 윤리를 성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④ 윤리의 인지단계 → 결정과 행위 단계 → 윤리의 성찰단계 순으로 투입된다.

정답 ④

해설 ④ (틀림) 인간은 사회적·외적 윤리를 3단계로 개인에게 투입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은 “윤리의 인지단계 → 윤리의 성찰단계(↔ 결정과 행위 단계 (x)) → 결정과 행위단계(↔ 윤리의 성찰단계 (x))” 순으로 투입된다.

**25. 다음 설명과 그 사상을 연결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칼을 갖지 못한 합의란 말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을 보호하는 힘을 갖지 못한다. - 게오르그 엘리네크
- ② 정의가 한번도 추구되지 않는 법은 부정의로운 법이며 심지어 법적성격을 결하고 있다. - 라트부르흐
- ③ 너는 인간성을, 그것이 너 자신의 인격에 있는 것이든, 어느 다른 인격에 있는 것이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취급하고 결코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라. - 칸트
- ④ 법률은 국가적으로 강제된 윤리질서이며 양자 사이에 본질적 구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 오토마이어

정답 ①

해설 ① (틀림) 계몽주의 사상이인 **토마스 홉스**(↔ 게오르그 엘리네크 (x))는 ‘리바이어던’에서 “칼을 갖지 못한 합의란 말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을 보호하는 힘을 전혀 갖지 못한다. …… 만일 아무런 권력이 정립되지 않거나, 또는 인간의 안전을 도모할 만한 위대한 권력이 없다면, (계약 후에도)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완력과 기량에 의존하게 된다”고 하면서 계약을 담보할 절대적 권위체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게오르그 엘리네크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면서 넓은 윤리적 요청 가운데 특별히 최소한의 것만이 법적인 요청을 받는다고 주장한 철학자이다.  
 ③ (옳음) 칸트의 이런 인격주의 윤리설은 철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인간 존엄의 권리 즉 인권의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2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의 책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은 국내에서만 허용된다.

정답 ④

해설 ① (옳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제1항  
 ② (옳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제2항  
 ③ (옳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제3항  
 ④ (틀림)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조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제4항).

-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7. 냉소주의와 회의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양자 모두 불신을 바탕으로 한 공통점이 있다.
  - ②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X이론에 입각한 행정관리가 있다.
  - ③ 회의주의는 특정문제를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건전한 회의주의는 대상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
- 정답 ②  
 해설 ② (틀림)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Y이론(↔ X이론(x))에 입각한 행정관리가 있다.  
 정리 냉소주의의 문제와 극복

|            |  |   |
|------------|--|---|
| 개 념        | 자신의 신념체계가 붕괴되었지만 새로운 것에 의해 대체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아노미 현상(니더호퍼)   |   |
| 원 인        | 냉소주의는 공중의 생활이 위선으로 가득차 있다고 생각 할 때, 그리고 경찰조직이 하급직원에 대하여 무리한 요구를 할 때 나타남   |   |
| 회의주의와의 비교  | 개 념  | 냉소주의: 합리적 근거 없이 사회에 대한 신념의 결여로 인해 생기는 것<br>회의주의: 개별적 사안에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여 비판하는 것 |
|            | 대 상  | 냉소주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음<br>회의주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음                                     |
|            | 합리성  | 냉소주의: 신념의 결여에 합리적 근거가 없음<br>회의주의: 의심에 합리적 근거가 있음                              |
|            | 개선인지   | 냉소주의: 대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br>회의주의: 대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                        |
|            | 공통점  | 모두 불신을 바탕으로 한 점   |
| 냉소주의의 극복방안 | (1) Y이론에 입각한 행정관리(맥그리거) : 인간이 책임감 있고, 정직하여 민주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론<br>①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br>② 상사와 부하의 신뢰회복<br>③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개선<br>(2) 인간관 중 X이론 : 인간을 게으르고 부정직한 것으로 보아 권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이론 |   |

## 28.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에서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 그 예외사유를 밝히고 있다. 다음 중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에서 명시한 예외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②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가액 5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다만, 인가·허가·수사·단속·지도 등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공무원은 제외)
  - ③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④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소액의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정답 ②  
 해설 ① (적절함) 「경찰청 공무원 윤리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② (부적절함)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가액 5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다만, 인가·허가·수사·단속·지도 등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공무원은 제외)”는 『경찰청 공무원 윤

리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같은 강령 제14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는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같은 강령 제14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가액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적절함) 「경찰청 공무원 윤리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2항 제1호, 제1항 제3호

④ (적절함) 「경찰청 공무원 윤리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2항 제1호, 제1항 제4호

조문 「경찰청 공무원 윤리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가액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다만, 인가·허가·수사·단속·지도등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공무원은 제외한다)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소액의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7. <삭제>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항 제1호, 제3호에서 제5호까지 및 제7호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가액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
3. 가액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4.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5.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9. 최근 경찰관이 음주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국민에게 비난을 받은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런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 범죄는 경찰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
- ② 경찰에게 법은 ‘양날을 가진 칼’이므로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베는 칼이지만, 경찰이 범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경찰을 베는 칼이 될 수 있다.
- ③ 존 스튜어트 밀은 신뢰가 의무를 유발시킨다는 관점에서 공직자에게 신뢰받는 행동을 강조한다.
- ④ 경찰관의 과다채무로 인하여 봉급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올 경우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반시민일 경우 책임이 없으나 경찰관이라는 신분 때문에 책임이 주어지는 윤리적 이중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틀림) 델라트르(↔ 존 스튜어트 밀(x))은 신뢰가 의무를 유발시킨다는 관점에서 공직자에게 신뢰받는 행동을 강조한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기관련적 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람이다.

**30. 범죄원인에 관한 학설에서 사회구조를 원인으로 주장한 이론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통제이론
- ② 긴장(아노미)이론
- ③ 사회해체이론
- ④ 문화갈등이론

정답 ①

해설 ① (틀림) 사회통제이론, 사회학습이론, 낙인이론은 사회과정을 원인으로 주장한 이론에 해당한다. ②③④ (옳음) 사회해체론, 긴장(아노미)이론, 하위문화이론, 문화갈등이론은 사회구조를 원인으로 주장한 이론에 해당한다.

### 31. Mendelshon의 범죄피해자 유형론에 대한 연결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해자보다 더 책임이 있는 피해자 → 촉탁살인에 의한 피살자
- ② 책임이 조금 있는 피해자 → 무지에 의한 낙태여성
- ③ 가장 책임이 높은 피해자 → 공격을 가한 자신이 피해자가 되는 가해적 피해자
- ④ 완전히 책임 없는 피해자 → 영아살해에 있어서의 영아

정답 ①  
 해설 ① (틀림)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 있는 피해자 → 촉탁살인에 의한 피살자  
 가해자보다 책임이 많은 피해자 →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자  
 정리 Mendelshon의 범죄피해자 유형론(기준 : 피해자의 유책성 정도)

|                        |  |
|------------------------|--|
| (완전히) 책임 없는 피해자        |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미성년자, 영아살해죄의 영아 등   |
| 책임이 조금 있는 피해자          | (1) 대개 무지로 인해 피해자 되는 경우임.<br>(2) 낙태로 사망한 임신부의 경우 → 실제로는 대부분이 범죄가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함.                  |
|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피해자 | (1) 자발적으로 피해자가 된 경우가 적용됨.<br>(2) 동반자살(촉탁살인에 의한 피살자)  |
| 가해자보다 책임이 많은 피해자       | (1)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자, 사건을 유발한 피해자, 부주의한 피해자<br>(2) 호객꾼으로 가장하고 접근하여 공갈·협박을 하고 화가 난 상대의 반격으로 피해를 입은 자 |
| 가장 책임이 높은 피해자          | (1) 공격을 가한 자신이 피해자가 되는 가해적 피해자, 망상적 피해자<br>(2) 위법한 공격을 감행하여 정당방위에 의해 상해·사망에 이른 범인                  |

### 32. 「경찰청 112신고처리 매뉴얼」 상 표준지령지에 따른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된 것은?

- ① 출동시 유의사항 지시 → 출동위치지령 → 긴급배치지시 → 추가경력지원
- ② 출동시 유의사항 지시 → 출동위치지령 → 추가경력지원 → 긴급배치지시
- ③ 출동위치지령 → 출동시 유의사항 지시 → 추가경력지원 → 긴급배치지시
- ④ 출동위치지령 → 긴급배치지시 → 출동시 유의사항 지시 → 추가경력지원

정답 ③  
 해설 ③ (옳음) 『경찰청 112신고처리 매뉴얼』 상 표준지령지에 따른 순서는 “㉠ 출동요소 결정 → ㉡ 출동위치 지령 → ㉢ 출동시 유의사항 지시 → ㉣ 추가 경력 지원 → ㉤ 긴급배치 지시 → ㉥ 현장지휘자 지정 → ㉦ 관련 관서, 부서 통보 → ㉧ 지휘부 보고 → ㉨ 상황유지” 순이다.

정리 표준지령지에 따른 순서 및 조치 내용(참고 : 「경찰청 112신고처리 매뉴얼」)

| 연번 | 순서          | 조치 내용   |
|----|-------------|---|
| 1  | 출동요소 결정     | 신고장소에 가장 인접한 112순찰차를 우선 출동하도록 지령함.  |
| 2  | 출동위치 지령     | ① 주소가 명확한 경우에도 건물의 층수, 정·후문 등을 구체적으로 위치를 지령함.<br>② 신고자, 피해자, 목격자, 가해자, 범죄발생 위치 등을 구분하여 지령함.<br>③ 위치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치파악을 위해 접수반과 업무 협조함. |
| 3  | 출동시 유의사항 지시 | ①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방검복·테이저건 등 경찰장구를 휴대할 것을 지시함.<br>② 출동시 노출, 경광등·사이렌 취명 여부를 판단함.   |
| 4  | 추가 경력 지원    | 가해자의 수, 흉기 휴대 기타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112순찰차 추가 출동을 지령함.<br>※ 모든 가용경력에 대해서 초동조치와 관련한 지휘권을 행사함.  |
| 5  | 긴급배치 지시     | 가해자 도주 등 필요시 긴급배치를 실시함.   |
| 6  | 현장지휘자 지정    | 중요사건일 경우 현장책임자를 지정하고 통보함.   |
| 7  | 관련 관서, 부서통보 | 119, 군부대, 헌전·가스안전공사, 문화재 관리기관, 기타 관련 관서 등에 통보하고 출동을 요청함.  |
| 8  | 지휘부 보고      | 선 조치 후 보고   |
| 9  | 상황유지        | ① 추가 확인사항 등을 출동요소에 반복하여 지령하고 이를 공유함.  |

② 현장책임자 입장 시까지 출동요소를 지휘함.

**33.**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위해를 수반한 무기사용 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가 항거·도주하는 경우
- ②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를 방호하는 경우
- ③ 구속영장 등 집행에 항거·도주하는 경우
- ④ 대간첩 작전 시 무장간첩이 투항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정답 ②

해설

- ① (옳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제1항 제1호
- ② (틀림)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위해를 주지 않고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제1항 본문 참고.
- ③ (옳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제1항 제2호
- ④ (옳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제1항 제4호

조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88.12.31, 1999.5.24>
1.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삼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 본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삼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3.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흉기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4.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등을 말한다. <신설 1999.5.24>
- ③ 대간첩·대테러작전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9.5.24>

**3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상 등록체육시설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스키장업
- ② 골프장업
- ③ 자동차 경주장업
- ④ 골프 연습장업

정답 ④

해설

정리

④ (틀림) 골프장업은 등록체육시설업이나, **골프연습장업은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          |   |
|----------|---|
|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
|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35.** 다음 중 대상업종과 허가 등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일반게임제공업 - 허가
- ② 「식품위생법」상 제과점영업 - 등록
- ③ 「의료법」상 안마시술소 - 신고
- ④ 「음식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노래연습장업 - 등록

정답 ②

해설 ② (틀림) 「식품위생법」상 제과점영업 - 신고(↔ 등록(X))

정리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식품접객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식품접객업)

| 대상업종    | 내용   | 허가 등<br>(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
|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br>↳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함. | 신고                           |
|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
|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
|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허가                           |
|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신고                           |
|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

**3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과 동법 시행령 상 규정된 사행행위영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상업
- ② 복권발행업
- ③ 카지노업
- ④ 추첨업

정답 ③

해설 ③ (틀림) 카지노업은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등 특정 기수를 이용,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영업을 말하고, 사행행위의 일종이다.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면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이 적용된다.

정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상 사행행위의 종류

|            |   |
|------------|---|
| 복표발행업      |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 현상업        |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 그 밖의 사행행위업 | 회전판 돌리기<br>참가자에게 금품을 걸게한 후 그림이나 숫자 등의 기호가 표시된 회전판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화살등을 쏘거나 던지게 하여 회전판이 정지되었을 때 그 화살등이 명중시킨 기호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
|            | 추첨업<br>참가자에게 번호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고 지정일시에 추첨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
|            | 경품업<br>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당해 증표에 표시된 등수 및 당첨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

**37.** 「아동복지법」 제17조 상 금지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같은 것으로 연결된 것은?

- ①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
- ②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 아동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③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 ④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정답 ④  
해설

- ① (다름)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1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같은 법 제17조 제3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② (다름)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같은 법 제17조 제4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같은 법 제17조 제1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3호)
- ③ (다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같은 법 제17조 제9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4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같은 법 제17조 제5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④ (같은)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같은 법 제17조 제7호)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같은 법 제17조 제8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조문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4.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71조(벌칙)**

-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5.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6.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7.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